

의안번호	제 28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
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8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10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, 희망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수용이 가능함
- 2016. 3. 1.자 산업체 특별학급 폐급 후 3년 간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어 「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19. 8. 9. ~ 2019. 8. 29.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61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52조(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)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·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·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.

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を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(이하 “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”라 한다)를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를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